

의안번호	2220463
의 퇴 인	곽규택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3.
추 계 번호	26F396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
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1조의36 신설 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해양산업특화혁신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 - 감면내용: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50%, 이후 2년 이내 30% - 감면한도: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감면한도로 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%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 (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근로자수 × 2,000만원) - 적용기한: 2031.12.31.
2	안 제121조의37 신설 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- 적용대상: 수도권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 시 - 과세특례: ① 또는 ②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① (법인)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 ② (거주자)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- 적용기한: 2031. 12. 31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6 신설 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1조의37 신설 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·소득세 세액감면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 이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됨
- 그러나 현재 혁신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입주기업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,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소득 및 양도차익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
 -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는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되어야 함
 -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곽규택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20462)은 2026년 8월 5일 발의되어 2026년 9월 23일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임
 - 개정내용: 부산의 해양특화지구를 ‘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’로 격상하고 혁신지구에 창업·연구개발센터 조성 및 해양 빅데이터와 스마트항만 등 디지털 해양기술을 지원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